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 |
|----------|-----|

제출년월일 : 1997. 3. 6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전면 개정('96. 7. 1시행)되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96. 2. 13시행)됨에 따라 기금관련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충청북도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직명과 노인복지적립기금운용관의 직명을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개정에 따른 기금관련 조항 정비

-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재산 삭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 ⇒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인한 직명변경 및 도 설치위원회 개선방안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을 전문성·대표성에 맞게 조정(조례 제5조 및 제 13조)

- 조례 제5조 : 위 원 장 (부지사 ⇒ 사회복지국장)
부위원장 (기획관리실장 ⇒ 가정복지과장)
위 원 (가정복지국장 ⇒ 사회복지과장)
- 조례 제13조 : 가정복지국장 ⇒ 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계장 ⇒ 가정복지계장

□ 근거법령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및 제5조 ----- 따로붙임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및 제8조 ----- 따로붙임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 제2항제2호중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상금”을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부지사”를 “사회복지국장”으로, “도기획관리실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충청북도 가정복지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하며 동조 제4항중 “충청북도 노인복지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가정복지국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노인복지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하며 동조 제2항중 “연합회 사무국장”을 “연합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